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1504 |
|----------|-------|

발의연월일 : 2025. 7. 16.

발 의 자 : 김용만 · 전현희 · 한민수  
박상혁 · 강준현 · 이정문  
김승원 · 조계원 · 최혁진  
염태영 · 이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현충시설과 관련해 지정, 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만을 두고 있음.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희생·공헌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기리는 시설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장소를 포함하는 한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국외에 흩어져 있는 보훈기념시설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마. 보훈기념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16조).

##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기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독립운동기념시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관련된 기념관, 추모비, 생가 등

나. 호국기념시설: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관련된 기념관, 추모비, 생가 등

다. 민주화운동기념시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관련된 기념관, 추모비, 생가 등

라. 기타보훈기념시설: 독립운동기념시설, 호국기념시설, 민주화운동기념시설 외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추모비, 생가 등

2. “관리자”란 보훈기념시설을 보존 및 관리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

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색, 역사적 중요성 및 상징, 시설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기념시설을 건립·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기념시설은 그 원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훈기념시설 건립·지정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직전 5년 간의 보훈기념시설 건립·지정에 대한 평가
3. 보훈기념시설 관리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4.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지정·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보훈기념시설의 안내해설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훈기념시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지정·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 ①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지정·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
3.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보훈기념시설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지정·보존·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역사, 건축, 조형물, 외교,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훈기념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과 관련된 공무수행,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 또는 장소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훈기념시설의 지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과 관련된 공무수행, 민주주의 발전과의 관련성
  2. 시설 또는 장소의 보존상태
  3. 보훈기념시설 지정 이후 관리계획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보훈기념시설 지정 및 지정 신청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훈기념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과 관련한 시설 또는 장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한 시설 또는 장소
3. 보훈기념시설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9조(관리자의 지정 및 책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보훈기념시설을 지정할 때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훈기념시설의 건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성·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보훈기념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보훈기념시설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의 보훈기념시설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안내해설사 양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의 역사적 의미, 연혁, 관련 인물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해설사의 양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훈기념시설의 현황, 보존 및 관리실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 보훈기념시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기념시설 관리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훈기념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관

리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3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 요청한 것은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지정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은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보훈기념시설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은 이 법에 따른 독립운동기념시설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수호 관련 시설은 호국기념시설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현충시설 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관리자는 이 법 제9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은 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2(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를 삭제한다.